

#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 현행 유지 건의

- 대한석유회회 -

1. 최근 정부에서는 '99년도 상반기 할당관세 운영과 관련,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정부에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제도는 수입나프타의 잠정관세율 1%와 동일한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폐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불구하고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이 3%로 조정될 경우에는 우선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자재의 관세율보다 낮은 역관세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국내 생산공급보다 수입나프타의 사용을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잉여나프타물량에 대해서는 수출이 불가피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저가수출도 이루어져 국제수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관세율 차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수출입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국내 나프타의 안정적인 공급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에너지 안정성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소비지 정제주의 정책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내 생산나프타와 수입나프타가 사용되는 용도에 있어서도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나프타 전량에 대해서는 1% 잠정관세가 적용되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잠정관세율과 동일한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시어 '99년도 상반기 할당관세 물품지정시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수입나프타와 동일한 수준인 1%가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율 변화 추이

적용일자	나프타제조용원유	원 유	비 고
'84.4	1%	5%(기본)	수입나프타 1%(잠정)적용
'86.4	"	12%(긴급)	"
'87.1	"	24.5%(긴급)	"
'87.10	"	10%(긴급)	"
'90.9	"	1%(할당)	"
'93.7	2%	2%(할당)	"
'95.7	3%	3%(할당)	"
'96.3	3%	5%(기본)	"
'97.1이후	1%	5%(기본)	"

나프타 수급현황

	(단위:천배럴)		
	96년	97년	98.1~9월
생산(%)	103,128(56%)	154,319(66%)	111,113(58%)
수입(%)	80,204(44%)	79,325(34%)	79,295(42%)
계(%)	183,332(100%)	233,644(100%)	190,408(100%)
수출물량	30,771	36,942	32,059

※ '93.7~'96.12 역관세 문제가 발생된 바 있으나, '90년 Gulf 사태로 인해 국내도입 원유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시점에서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별도의 추가 할당관세 적용 요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97년부터 역관세 문제가 시정되었음.